

널리 보기

: 택배기사의 건강장해 예방대책

택배기사의 건강장해 예방대책



백희정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강의교수



- 택배기사의 건강장해와 예방방안 -

- ◆ 2월 택배기사의 업무활동시간과 건강장해
- ◆ 3월 택배기사의 건강문제
- ◆ 4월 택배기사의 건강장해 예방대책

2020년 16명의 택배기사 사망 중 일부는 과로사로 승인¹⁾되며 택배기사의 장시간 노동이 건강장해와 과로사를 유발함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 2월 호에는 택배기사의 업무 및 활동시간과 업무·활동 전반에서 확인 가능한 건강장해를, 3월 호에는 자가 보고한 택배기사의 건강문제를 소개한 바 있다. 이번 호는 택배기사의 건강장해와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정부, 택배회사, 그리고 택배기사 개인적 차원의 개선 방안을 보건관리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²⁾

특히 택배기사의 건강진단 대상 편입 방안, 유해요인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업무수행 도중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는 방안, 안전보건교육 확대 방안, 건강인식개선과 병행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적용방안 등 정책적 관점을 중심으로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산재 신청에 대한 일부 결과임

2) 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위탁과제인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과로사 예방 방안」(백희정 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0년)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1. 건강진단 대상의 확대

근로자는 직업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다.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진단이 필요한 까닭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는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건강검진 대상은 근로자이며,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의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며,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현재 택배기사의 건강검진 미수진율은 약 40%에 달한다.

2020년 11월 정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근로자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택배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일반근로자와 달리 택배기사는 택배사와의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택배대리점과 위·수탁 계약관계에 있으므로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택배사가 아닌 택배대리점주에게 부과한다는 것이다. 내용 면에서는 타당하나, 택배업의 현장을 고려하여 택배기사가 더욱 보호받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의 제외대상자에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며,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현재 택배기사의 건강검진 미수진율은 약 40%에 달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택배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2.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택배기사 80% 이상은 상지근육통과 하지근육통 및 요통을 경험하고 있다. 택배기사의 일 평균 업무시간은 12시간 이상으로, 운송물 정리, 배송, 수탁 및 집화를 비롯한 모든 업무과정에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산재한다. 택배기사는 배송하는 물품의 크기와 부피에 따라 근골격계 부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골격계 부담이 특히 큰 업무는 배송 시 반복되는 계단 오르내리기, 상하차 작업 등이다. 택배기사의 재해 발생형태에 대한 통계자료 또한 교통사고를 제외하면 넘어짐, 떨어짐 등으로 말미암은 근골격계질환이 호발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택배기사의 업무는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으로 분류되며, 연속작업 여부를 중시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서 제외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³⁾ 또한 유해요인조사가 요구되는 작업 중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해요인조사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는 11개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열거하였다. 그러나 단기간 혹은 간헐적 작업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서 제외함을 명시하며, 근골격계질환의 유해요인조사 대상에서 또한 제외된다.

통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을 제외하게 된 것은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종사자처럼 육체적 노동이 요구되는 작업이되, 종사 시간이 다소 일시적이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3)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는 유해요인조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657조제1항 제3호에는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에 관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해요인조사가 필요한 작업 중에서 근골격계질환의 대상이 되는 유해요인조사 대상은 고용노동부 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2020. 1. 6. 일부개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간헐적으로서 작업이 지속·연속적이지 않아 그 영향이 지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제외한 것이다.

근골격계질환은 작업시간, 중량물, 연속작업 시간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작업이 신체에 미치는 부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의 주된 업무가 주로 이동하며 운반하는 작업으로, 그 형태가 부정형이고 불연속적이라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택배기사는 일정 시간 중량물을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여, 간헐적 작업 또는 단기간 작업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

택배기사는 일정 중량을 일정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다루는 작업에 종사한다. 중량물 또한 일정 무게 이상으로 근골격계에 부하가 되는 작업이 잦아 근골격계질환에 취약하다. 따라서 고시 내용의 개정으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대상으로 택배기사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안전보건교육제도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명시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5조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시간과 내용을 제시한다.

이 중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은 2시간으로,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 12개 항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특별교육’은 16시간(최초 작업 종사 이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 실시 가능)으로 택배기사와 관련한 교육 항목이 5개 존재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 「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제13항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이 있다.

택배기사는 장시간 노동하며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 이환과 근골격계질환의 이환 빈도가 높다. 또한 감정노동 및 폭력 등에 노출되며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에 더해 운송이라는 작업 특성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가 타 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택배기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현 실정과 알맞게 시급히 이행

택배기사는 장시간 노동하며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 이환과 근골격계질환의 이환 빈도가 높으며 감정노동 및 폭력 등에 노출되며, 운송이라는 작업 특성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가 타 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하여야 한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한정하여 2시간 남짓의 단순 교육을 제공하기보다는 일반 사무직 근로자와 동등하게 안전·보건교육 시간과 내용을 조정하여 최소한 분기별로 3시간의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4. 건강인식 개선 환경조성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적용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과로사 예방 방안」(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0년) 연구 보고서는 택배기사의 건강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연구진의 설문조사 결과, 택배기사를 구성하는 연령층 중 40대~50대 초반의 중년층이 60% 이상에 달했다.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은 '보통' 또는 '나쁘다'가 78%이며, 27.2%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 유병자이고 업무 관련된 근골격계 증상의 경험률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비만율은 과반이 넘는 56.1%에 달하였으며, 72.4%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일한 경험이 있었다. 택배기사의 66.5%가 흡연자이며 64.8%는 잦은 음주를 한다고 응답하였음에도 전체 택배기사의 53%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 응답하였고, 최근 2년간 건강검진 미수검률은 약 40%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에 택배기사를 포함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택배기사는 중량물을 취급하며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는 등의 업무를 하루 평균 12~13시간 연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업무 특성상 충분한 휴게시간을 갖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택배기사가 개인적인 차원의 건강관리는 건강과

택배기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현실정과 알맞게 시급히 이행하여야 한다.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기사가 담당하는 구역의 업무강도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자가건강측정도구를 마련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택배기사는 업무수행 중 휴대전화 기반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과로나 피로도를 측정하고 알람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관리 앱이 개발된다면 자가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식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며, 나이가 과로사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근로,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사전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안전보건공단의 주관하에 개발과 보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바일 앱으로 수집된 자료가 지역건강센터와 연동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보다 효과적인 건강관리 및 재해의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과로사의 원인이 되는 뇌심혈관질환의 고위험군에게도 지속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건강장해와 과로사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